



수신 도내 사회복지시설 · 단체 대표

(경유)

제목 2026년 제1차 사회복지 자원봉사 신규인증관리요원 양성교육 신청 안내

- 사회복지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진력하시는 귀 시설 · 단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우리 협의회에서는 「사회복지 자원봉사 관리규정 제7조(인증관리요원의 위촉 및 업무 등)」에 의거하여 현장에서 사회복지 자원봉사활동을 직접 관리하는 자원봉사관리자들을 대상으로 ‘사회복지 자원봉사 신규인증관리요원 양성교육’을 실시하오니 귀 시설 · 단체 업무담당자가 교육에 참가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안내

| 일시 | 대상 | 장소 | 교육비 |
|-------------------------------|---|-------------------|--|
| 2026. 2. 4.(수) 14:00~17:00 | 시설 · 단체 종사자(4대보험 가입자) 중 인증관리요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자 총 25명 | 우리 협의회 2층 삼다수홀 | 회원 10,000원 비회원 20,000원 (협의회 회비 납부 여부에 따라 구분) |

나. 제출서류 :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www.4insure.or.kr에서 발급 가능)

*** 교육신청 후 협의회 이메일(jejubokji@hanmail.net)로 사전 제출(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는 교육신청자 본인 이름으로 로그인하여 출력), 서류 미제출 시 교육 수강 불가**

다. 신청기간 : 2026. 1. 26.(월) 09:00 ~ 1. 30.(금) 18:00

라. 신청방법 : [우리 협의회 홈페이지(www.jejubokji.net)에서 신청자 본인 아이디로 접속] → [제주사회복지협의회 ‘교육신청’] → [‘2026년 1차 사회복지 자원봉사 신규인증관리요원 양성교육’ 신청] → [홈페이지 전자결제시스템으로 결제]

마. 기타사항

- 교육 불참 시 최소 3일 전에 연락해야 환불 가능(교육비 환불은 공문으로 요청)
- 관리센터로 지정되지 않은 시설 · 단체의 경우, 먼저 관리센터 지정가능 여부에 대해 협의회로 문의한 후 교육을 신청해야함

- 인증관리요원은 3년(36개월)마다 1회 이상 보수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며, 3년이 경과하여 vms 접근권한이 제한된 경우에는 양성교육을 재이수해야 함
→ 개정 전 규정(인증관리요원은 3년마다 한 번씩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5년 이상 보수 교육을 받지 않은 인증관리요원은 양성교육을 이수해야 함)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 일정 기간 개정된 규정의 적용을 유예했으나 2025. 12. 31.자로 유예기간이 종료됨
- 제주도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양성교육을 이수한 적이 있는 경우 협의회로 사전에 연락해 주셔야 하며, 인증관리요원 임시등록 절차는 교육 당일 진행할 예정이오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장



담당(과장) 강보연 사회가치부장 부서연 사무처장 전결 2/2
협조자

시 행 제사협2026-104 (2026. 1. 23.) 접 수 ()
우 6330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청풍남8길 12-1(화북1동 1112-1) / www.jejubokji.net
전 화 (064)726-5786 전송 (064)702-3383 / jejubokji@hanmail.net / 공개